

부산직할시 사하구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
